

5 교통에 관한 법규

(1) 자동차 운전면허

①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

여러분이 일본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.
또한,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.
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②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

A	일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
B	제네바 조약 체결국 발급의 국제운전면허증 ※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십시오.
C	외국 운전면허증(독일, 스위스, 프랑스, 벨기에, 타이완, 슬로베니아, 모나코에 한함)과 일본어 번역문 ※일본어 번역문(당해 면허증 발급국의 대사관, 영사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 'JAF'가 작성한 것),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 ※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 후 1년간입니다.

③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전환

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일본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센터에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A	조건 외국 행정청 발행의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그 면허 취득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나라에 3개월 이상 체재하신 분.
B	필요 서류 등 ①외국 운전면허증 ②외국 면허증의 번역문 당해 면허증 발급국의 대사관, 영사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 'JAF'가 작성한 것 ③국적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의 사본 ④여권 등의 서류(여러 개로 증명하려면 여러 권 필요) 당해 외국에 3개월 이상 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⑤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, 무배경,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 사진으로 가슴부터 위가 찍혀 있는 것. 크기 세로 3.0cm×가로 2.4cm ⑥수수료 ⑦일본 운전면허증(이전에 취득한 적이 있는 분만)

C	내용
	특례 면제국은 적성시험만 실시하며 그 이외의 나라는 적성시험, 지식 확인, 기능 확인이 있습니다.
D	접수 ※사전 예약 (전화 가능)이 필요합니다. (평일 8:30 ~ 17:00)
	히로시마현 운전면허센터·동부운전면허센터 ☎082-228-0110 내선 703-253 (히로시마현 운전면허센터) 704-262 (동부운전면허센터) 월요일~금요일 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①8:30 부터 9:00 까지 ②13:00 부터 13:30 까지

(2) 자전거 교통 법규

① 자전거를 타기 전의 준비

○방법 등록

자전거는 방법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자전거를 구입한 점포 등에서 방법 등록을 합시다.

○안전 장비

자전거는 브레이크, 벨 등의 경음기를 갖추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
야간 등에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하고 미등 또는 반사기재를 갖추어야 합니다



○열쇠

자전거는 열쇠로 잠급시다. (될 수 있으면 이중 잠금 장치)

짧은 시간이라도 자전거를 두고 이동할 때는 열쇠를 잠그도록 합시다.



○보험

자전거 교통사고라도 자전거 운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합시다.

② 자전거를 타는 법

○음주운전 금지

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 술에 취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


○두 명 타기 금지

자전거는 두 명이 타서는 안 됩니다.

단, 만 16 세 이상인 사람이

- 만 6 세 미만의 유아 1 명을 유아용 좌석에 태운다
- 유아 2 명을 태우는 특별한 구조의 자전거에 만 6 세미만의 유아 2 명을 태운다.

등의 경우에는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.



○헬멧 착용

만 13 세 미만인 어린이를 자전거에 태울 때는 헬멧을 씌웁시다.

○그 외의 금지 행위

자전거를 타고 '휴대전화로 통화한다', '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든다', '이어폰 등으로 음악을 크게 듣는다' 등을 하면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.



○주륵장의 이용

자전거는 주륵장 등 정해진 장소에 세우도록 합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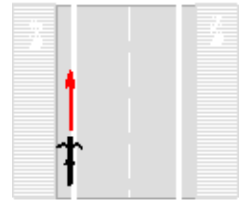
도로 등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철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
② 자전거 통행 방법

○차도 통행

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는 차도가 원칙입니다.
차도의 좌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.



○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

만 13 세 미만인 어린이나 만 70 세 이상의 사람 등은
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자전거 통행 가능 표식이 있거나 차도를 통행하는
것이 위험하거나 금지된 경우 등은 자전거로 보도를
통행할 수 있습니다.

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
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
때는 일시정지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음시다.

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(표식)



자전거 통행 금지(표식)



○신호의 준수

자전거는 '보행자·자전거 전용' 표식이 있는
신호기가 있으면 그 신호기 (①) 을 없으면
일반(차량용) 신호기 (②) 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①

②



○병진(並進) 금지

자전거는 표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전거와
나란히 달려서는 안 됩니다.

일렬로 통행합시다.

병진 가능(표식)



○일시정지

자전거는 건물목 경보나 일시정지의 표식 등이
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좌우의 안전을
확인해야 합니다.



③ 교통사고

자전거 운전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전거 운전을 멈추고 부상자를
구호해야 합니다.

또한, 즉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과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.
보고는 현장에서 '110 번' 으로 연락하거나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연락하는
방법 등이 있습니다.